

총리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소관)
연 월 일	2026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가 전체주소로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가 있어,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시행령(안) 개정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보 주소게재 원칙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 1) 개정 시행령(안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2) 특허고객번호 부여 단계에서 공보 주소의 부분게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해당 선택란을 삭제하도록 함.

나. 외국주소의 부분주소 게재를 위한 기재방식 정비(별지 제4호·제5호·제9호·제14호·제29호·제57호)

- 1) 외국주소를 단일 [주소]란에 기재하던 것을, 국가별 주소체계 차이를 고려하여 [주소 1]과 [주소 2]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 2) [주소 1]에는 국내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국가명 포함), [주소 2]에는 상세주소를 적도록 하여 외국주소의 부분 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앞쪽)

[제출인]

[제출인 구분]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주국]

[전자우편주소]

[제출인 인감(서명)]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공보에 제출인의 주소가 일부(시·군·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가. 이 서식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지식재산처에 등록하고 지식재산처 고유번호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29조).

나. 한편,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4,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및 「상표법」 제3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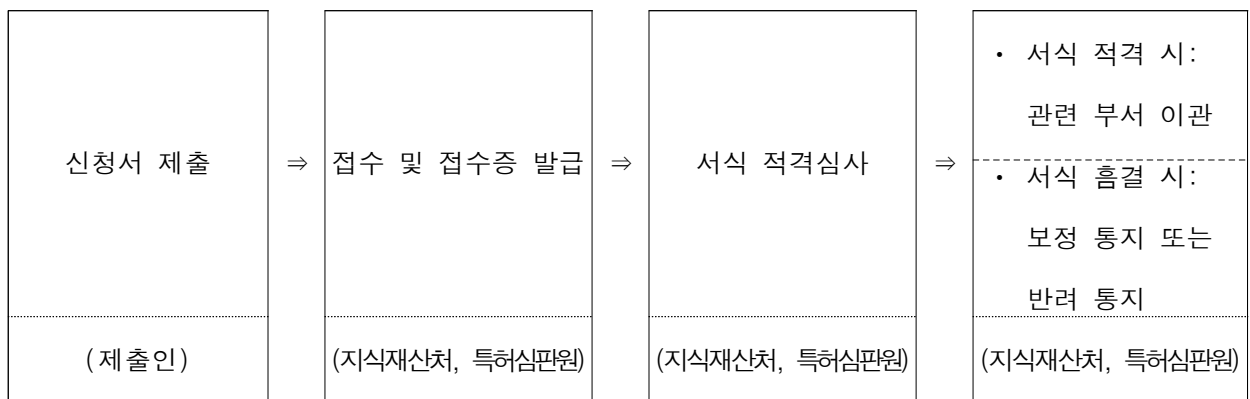
다.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서식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라. <삭제>

마. 지식재산처는 본 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발명·고안 등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1조, 「실용신안법」 제1조, 「디자인보호법」 제1조, 「상표법」 제1조).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릅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제출인 구분]

“국내 자연인”, “외국 자연인”, “국내 법인”, “외국 법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1)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란에 성과 이름 순서로 공백 없이 적으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국문표기] 및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2) 제출인이 외국인(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두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명칭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명칭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고 [명칭의 영문표기]란은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예 1] 외국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예 2]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명칭의 국문표기] 에이에스디 코퍼레이션

[명칭의 영문표기] ASD corporation

다. [국적]

제출인의 국적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이 경우 제출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국적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 [주민등록번호]

제출인 구분에 따라 다음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국내 자연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인이 외국 자연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갖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추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제출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립·공립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내용,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바. [우편번호], [주소] 및 [거주국]

- 1)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 및 거주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이 경우 거주국은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 1]란과 [주소 2]란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소 1]란에는 국내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국가명 포함)를 적고, [주소 2]란에는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주국]란에는 [주소 1]란에 적은 국가명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예 1]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예 2] [우편번호] CA90028

[주소 1]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주소 2] 선셋대로 0000

[주소의 영문표기] 0000 Sunset Boulevard, Los Angeles, CA, USA

[거주국] US

- 2) [주소]란에 적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거주국]란의 다음 행에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송달장소의 주소]란을 만들어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 주소만 적을 수 있으며, [주소]란의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
번호

- 3) 삭제 <2024. 10. 31.>

사. [전자우편주소]

제출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내용,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출원인의 동의

(전자문서 이용 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습니다)를 받아 마감기한에 대한 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제출인 인감(서명)]

- 1) 인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란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고, 서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서명]란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서명 날인란을 만들어 선명하게 서명합니다. 인감과 서명을 같이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 및 서명]란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 및 서명 날인란을 각각 만들어 선명하게 날인 및 서명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서명)]란을 삭제합니다.
- 2)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제출인 인감(서명)]란과 같은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며,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에 [특허고객번호]를 적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3) [제출인 인감(서명)]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컬러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 1)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란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출원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건이 없거나 계류 중인 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10-1998-1234567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어 이를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그 밖의 사항]란

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과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안에 표시(예:)합니다. 그 밖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십시오.

[예]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인 구분에 따른 다음 항목의 증명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참조)

가)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중 1통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 1통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통

※ 외국 법인 중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또는 고유번호증)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국가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 1통

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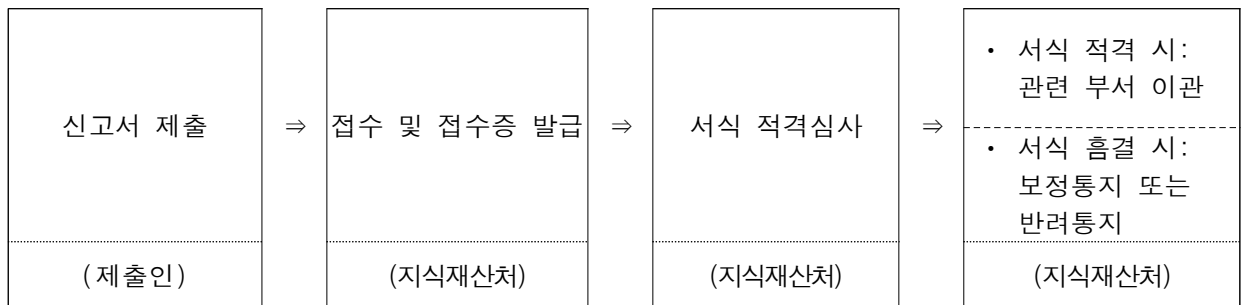
나.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분	내용	관련 규정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 등록명의인의 주소·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특허고객번호 정정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 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 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협정”이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 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 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협정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 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

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 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에는 “출원인”, “국제출원인”, “심사청구인”, “등록명의인” 등으로, 특허고객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후 출원인” 으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 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나.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의 표시]란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밝히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1234567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지식재산처참조번호]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KR-2014-3123456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취소신청에 관한 절차	[취소신청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17-소-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5. 【변경(경정, 정정)내용】란

가.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경우

- (1) 【변경(경정)항목】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변경(경정)하려는 항목을 적고, 【변경(경정)전】란에는 변경(경정)전의 해당사항을, 【변경(경정)후】란에는 변경(경정) 후의 해당사항을 적고, 변경(경정)항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외국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 1】과 【주소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소 1】란에는 국내주소의 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국가명 포함)를 적고, 【주소 2】란에는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주국】란에는 【주소 1】란에 적은 국가명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예 1] 【변경(경정)항목】 주소

【변경(경정)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변경(경정)후】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5길 40

[예 2] 【변경(경정)항목】 주소

【변경(경정)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선셋대로 0000

【변경(경정)후】

【우편번호】 8001

【주소 1】 스위스 취리히

【주소 2】 반호프슈트라세 00

【주소의 영문표기】 33 Bahnhofstrasse, Zurich, Switzerland

【거주국】 CH

(2)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경정)전】 란을 삭제하고, 【변경(경정)후】 란의 다음 행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서명란 또는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변경 후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선명하게 서명 또는 날인하며, 서명 또는 인감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칼라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나.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1) 【정정항목】 란은 삭제하고, 다음 예와 같이 【정정전】 란 및 【정정후】 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 및 【특허고객번호】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정정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란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예] 【정정내용】

【정정전】

【성명(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정정후】

【성명(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2) 【정정전】 , 【정정후】 란의 【성명(명칭)】 , 【특허고객번호】 란에는 각각 정정 전과 정정 후 출원인의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명칭]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디자인의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적은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6. 【변경(경정, 정정)원인】 란

【변경(경정, 정정)원인】 란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이유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제출인 구분에 따른 다음 항목의 서류 1통

(가)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성명을 개명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통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라) 외국 법인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명칭·주소변경증명서,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선언서 또는 국내 영업소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중 1통

(마) 국가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 1통

(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통

(2) 특허고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정정 신고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정정 신고의 서식 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라.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정정 신고의 서식 중 출원인 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변경(경정)과 함께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변경(경정)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같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등록명의인이 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

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는 일괄하여 변경(경정)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경정)하려면 최초 신청 시에는 이 서식 대신 「특허권 등의 등록명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을 사용하고, 그 후의 신청 시에는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마.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지식재산처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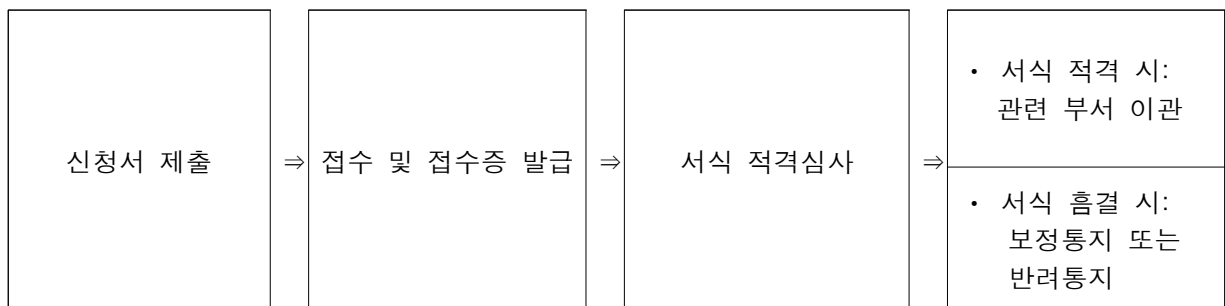
별지 제9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1. 보정구분 및 관련 규정

보정구분	내 용	관련 규정
출원서 등 보정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書 旨)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8조· 제40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제10조의3·제17조
출원서 등 보완	공지에 외적용 취지 기재를 보완하려 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실 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명세서 등 보정	출원의 요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실 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이의신청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 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 칙」 부칙 제3조 및 산업자원부령 제383 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취소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 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취소신청서 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취소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 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 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청구서 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 충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정정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절차, 기술평가절차, 취소신 청절차, 무효심판절차, 정정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산 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 행규칙」 부칙 제3조·제4조
임시 명세서 보 정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2. 처리절차



(제출인)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보정구분]란

보정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2.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출원서 등 보정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명세서 등 보정(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원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에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안에 표시(예:)합니다.

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명세서 등 보정(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에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안에 표시(예:)합니다.

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정정명세서 등 보정인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안에 표시(예:)하고, 취소 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정정명세서 등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의 안에 표시(예:)합니다.

3.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 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각각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란 또는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란에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국제출원번호]란은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과 동시에 국내단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때에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등 보정 중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란에 해당 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를 적고, [심판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1234567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취소신청에 관한 절차	[취소신청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17-소-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13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지식재산처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1-00-1234567-12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7. 【보정할 서류】란

보정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취소신청서 등 보충 또는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에는 【보정할 서류】란을 【보충할 서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예] 【보정할 서류】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8. 【보정할 사항】란

가. 출원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또는 취소신청서 등 보정(보충) 또는 심판청구서 등 보정(보충)의 경우

(1)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적으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수수료

【보정방법】 납부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유예희망시점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5)개월

(2)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발명자의 【주소】 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며, 보정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항목】 발명자, 우선권주장, 첨부서류 등

(3) 【보정방법】 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적으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의 보정방법을 적으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발명자, 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4) 【보정내용】 란에는 보정대상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으며, 보정대상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발명자, 우선권주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정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발명자의 주소가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 1】 란과 【주소 2】 란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소 1】 란에는 국내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국가명 포함)를 적고, 【주소 2】 란에는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 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주국】 란에는 【주소 1】 란에 적은 국가명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발명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플랜트, 제임스

【성명의 영문표기】 PLANT, James

【국적】 US

【우편번호】 8001

【주소 1】 스위스 취리히

【주소 2】 반호프슈트라세 00

【주소의 영문표기】 00 Bahnhofstrasse, Zurich, Switzerland

【거주국】 CH

- (5) 출원인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 (6) 서열목록이 수록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합니다)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내용을 반영한 전체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합니다.
- (7) 출원서 【기타사항】 란의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항목의 표시는 출원서 제출 후 보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기재요령을 참고해 작성합니다.)

나. 명세서 등(요약서, 도면 포함)의 보정 또는 정정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 (1) 【보정할 사항】 란의 【보정대상항목】 및 【보정방법】 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보정대상 출원의 종류 및 출원일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2)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 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취소신청에 관한 절차, 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정정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 ,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 란을 모두 삭제하고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을 첨부합니다.
- (3) 별지에는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 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번호 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우

예를 들어, 【발명의 목적】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요약서】 , 【명세서】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발명(고안)의 목적】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 【도면】 (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서 【명세서】 , 【청구의 범위】 , 【요약서】 , 【도면】 (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내용】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해결하려는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요약서】 , 【명세서】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발명(고안)의 내용】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다만, 최초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는 가능), 【도면】 (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서 【명세서】 , 【청구의 범위】 , 【요약서】 , 【도면】 (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내용】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해결하려는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명세서】 , 【발명(고안)의 내용】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다만, 최초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는 가능), 【요약서】 , 【도면】 (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서 【명세서】 , 【발명(고안)의 내용】 , 【청구의 범위】 , 【요약서】 , 【도면】 (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6) 서면으로 제출한 명세서 등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 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없고(다만,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출원 시 【특허청구범위】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가능),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최초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지 않은 명세서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 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지 않은 명세서

(8)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보정의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및 【청구항】 을 제외한 【표】 , 【수학식】 및 【화학식】 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9)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정의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및 【청구항】 을 제외한 【표】 , 【수학식】 및 【화학식】 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10) “발명(고안)의 명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11) 【서열목록】 을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내용】 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서열목록을 적습니다.

(12)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내용을 반영한 전체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합니다.

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 출원 시 【특허청구범위】 식별항목을 적지 않아 특허청구범위를 보정대상항목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특허청구범위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라. 임시 명세서 보정의 경우

(1) 임시 명세서의 보정은 전문(全文)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대상항목】란에 “전문보정”을 적고,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으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에 따라 전문(全文) 보정된 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필요한 도면을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전문보정

【보정방법】 별지와 같음

【보정내용】 별지와 같음

(2) 임시 명세서 보정은 한 번만 가능하며, 임시 명세서 보정 이후 명세서를 다시 보정할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보정대상항목이 청구항인 경우

(1) 보정할 내용이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발명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보정방법】란에 “정정”을 적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추가”나 “삭제”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 전 청구항의 번호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보정 전 마지막 청구항에 이어 추가되는 항의 번호를 적습니다.

(3) 청구항의 보정은 보정하려는 내용이 “정정” 또는 “추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으로 당초 청구한 발명(A)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A+B)하는 경우:

① 당초 청구한 발명(A)를 감축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1】 A+B

② 당초 청구한 발명(A) 대신에 새로운 발명(B)를 청구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삭제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 (보정 전 마지막 청구항 번호의 다음 번호를 적음)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청구항 ○】 B

[예 2]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으로 다음과 같은 청구항에서 인용되는 청구항 1의 발명을 포기하려는 경우

【청구항 1】 A로 된 장치

【청구항 2】 1항에 있어서, B를 포함하는 장치

① 올바른 “정정”의 기재례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삭제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2】 A+B

② 올바르지 않은 “정정”의 기재례

-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 【보정방법】 정정
- 【보정내용】 【청구항 1】 A+B
-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2
- 【보정방법】 삭제

※ 1999년 1월 1일 전 제출건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1)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 【보정할 사항】란의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이 경우 출원건의 명세서 등의 보정은 전문(全文) 보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全文) 보정된 명세서 등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밑줄을 쳐야 함) 2통을 별지로 작성하여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명세서 중의 일부를 보정하는 경우에 【보정대상항목】란에 적을 수 있는 식별항목에 대한 보정단위의 제한은 없으므로 명세서의 모든 식별항목을 보정단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항”이라 함)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명세서의 항(이미 보정된 항을 포함함)의 번호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3) 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삭제)”라 표기하며, 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정정)”이라 표기하고, 정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항을 2회 이상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의 번호 다음에 그 정정횟수를 표기합니다.

[예] (2회 정정)

(4) 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항의 번호는 출원명세서의 마지막 항의 번호에 이어 표기하며, 신설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신설)”이라 표기합니다.

(5) 항을 정정할 수 있는 보정은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보정 후 청구항의 번호가 보정 전 청구항의 번호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정 전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전혀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출원심사청구 후에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심사청구항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내용】 다음 행에 【추가청구항 수】란을 만들어 증가된 심사청구항 수를 모두 적습니다. 심사청구항

수의 증가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9. 【기타사항】란

가. 명세서 등 보정서의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재심사 청구)란을 만들어 안에 표시(예:)하고, 기재요령 제10호다목에 따라 보정료 및 재심사청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나. 명세서 등 보정서의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란을 만들어 안에 표시(예:)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단축이유】란을 만들어 지정기간의 단축 이유를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

【단축이유】 신속처리

10. 【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나. 심사청구 이후 보정(재심사청구 시 보정은 제외합니다)에 따라 심사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추가심사청구료】란을 만들고, 거절결정 이후 심판청구 시 항이 증가된 경우(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에 한정한다)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추가심판청구료】란을 만들며,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기타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마지막으로 【합계】란에 그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소신청서 보충 또는 심판청구서 보충의 경우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예] 【수수료】

【보정료】

【추가심사청구료】

【합계】

다.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한 출원건에 대한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재심사청구료】**란을 만들어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 그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재심사청구 후의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라도 별도로 **【추가심사청구료】**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 **【수수료】**

【보정료】

【재심사청구료】

【합계】

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등 보정,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충,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

-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정정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 한정함)
-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8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참고로, 해외출원 시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지식재산처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1. 특허출원인 경우

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 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색인어	가 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목적	불가능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 능	정 정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 능	정 정	
발명의 구성	가 능	정 정	

발명의 효과	가 능	정 정	
특허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색인어	가 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 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 능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발명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효과	가 능	정 정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실시에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특허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다.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발명의 효과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실시에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 능	추가/정정/삭제		
특허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기술분야	가능	정정		
배경기술	가능	정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발명의 효과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에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능	추가/정정/삭제		
청구범위	가능	추 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가능	정정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마.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식별항목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기술분야	가능	정정	
배경기술	가능	정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발명의 효과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실시예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가 능	정 정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2.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번역문 제출일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	-----	----------	--

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발명의 효과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실시에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기술분야	가능	정정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가능	정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발명의 효과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예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능	추가/정정/삭제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라. 번역문 제출일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식별항목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기술분야	가능	정정		
배경기술	가능	정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발명의 효과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예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능	추가/정정/삭제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3.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 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정 정	
색인어	가 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정 정	
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고안의 목적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 능	정 정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 능	정 정	
고안의 구성	가 능	정 정	
고안의 효과	가 능	정 정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불가능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정 정	
색인어	가 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고안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효과	가 능	정 정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실시에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정 정	
도 면	불가능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고안의 내용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고안의 효과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정 정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실시예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설명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고안의 내용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고안의 효과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정 정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실시예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가 능	정 정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마.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됩니다)

식별항목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설명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기술분야	가능	정정		
배경기술	가능	정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고안의 내용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고안의 효과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정정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예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청구범위	가능	추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가능	정정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4. 실용신안등록 PCT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번역문 제출일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식별항목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	
기술분야, 배경기술,	가능	정정/삭제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고안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이용 가능성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	
도 면	불가능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추가/정정	
배경기술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 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 정 가능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	-----	----------	--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설명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추가/정정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라. 번역문 제출일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식별항목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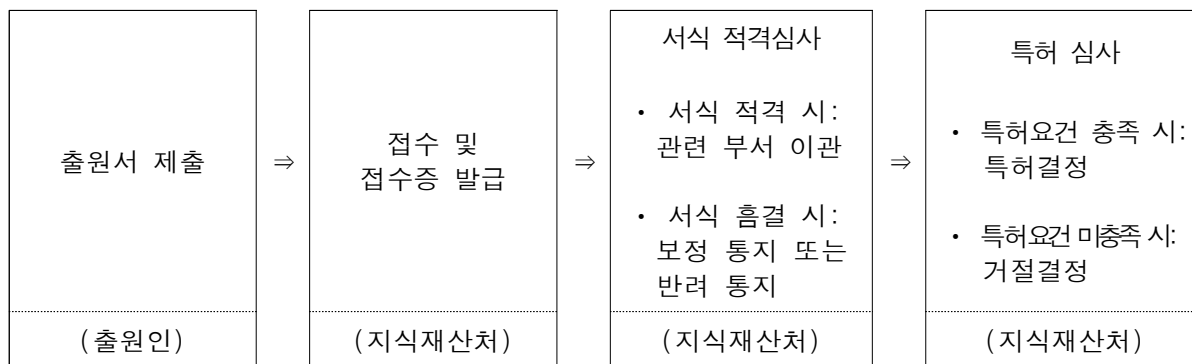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설명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기술분야	가능	추가/정정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에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
분할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
분리출원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거절결정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의2
변경출원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3조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특허법」 제34조, 제35조

2. 처리절차



※ 참고사항

가. 특허 심사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심사청구는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나. 특허 심사 결과,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인에게 특허결정을 송부하며,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재요령

1. [출원 구분]란

출원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 구분]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조번호] 1

3.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 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1)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으며, [첨부서

류]란에 “지분약정서” 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에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발명의 국문명칭] 및 [발명의 영문명칭]란

[발명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란에 적은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발명의 영문명칭]란에는 발명의 국문명칭과 동일한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을 적습니다.

6. [발명자]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주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발명자의 주소가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 1]란과 [주소 2]란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소 1]란에는 국내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국가명 포함)를 적고, [주소 2]란에는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주국]란에는 [주소 1]란에 적은 국가명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예 1]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예 2]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플랜트, 제임스

[성명의 영문표기] PLANTE, James

[국적] US

[우편번호] 8001

[주소 1] 스위스 취리히

[주소 2] 반호프슈트라세 00

[주소의 영문표기] 00 Bahnhofstrasse, Zurich, Switzerland

[거주국] CH

7. [출원언어]란

가. 특허출원에 사용하려는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1)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국어의 안에 표시합니다.

(2)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 외의 언어로 적으려는 경우(외국어특허출원)에는 영어의 안에 표시합니다.

※ 외국어특허출원 관련 규정: 「특허법」 제42조의3,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8.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9. [우선권주장]란

가.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위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먼저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않으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접근코드] 8654321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접근코드] 9876543

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및 [접근코드]란을 각각 적습니다. [출원국명]란은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으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적고, 그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

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고, [접근코드]란에 해당 접근코드를 적습니다.

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및 [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 [출원국명]란에는 “KR” 이라고 적고,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 라고 적습니다.

10.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심사유예신청	심사청구의 <input type="checkbox"/>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심사유예신청도 동시에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
조기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다만,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지에외적용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에외적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미생물기탁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한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국방관련 비밀출원	출원인이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국방관련 출원이라고 판단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11조
임시 명세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및 제6항

나. 심사유예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하면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면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료의 납부만 유예되고 출원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한편, 유예희망시점이 출원일로부터 5년(6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1) 심사청구료 납부의 유예 없이 심사유예신청만 하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개월)란을 만들어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을 만들어 불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하지 않음)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2) 심사유예신청을 하면서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하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개월)란을 만들어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을 만들어 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희망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유예)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심사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만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료 등과 심사청구료가 각각 납부될 수 있도록 출원서에 대한 접수번호(심사청구 미포함) 외에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고 이후 지식재산처에 대한 모든 절차(지식재산처 내 전산자료

관리, 제증명 발급 등)에서 출원서와 심사청구서가 각각 제출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납부되므로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3) 심사청구료 납부가 유예된 것일 뿐 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므로 심사청구료가 납부될 때까지 이후 제출되는 일부 서류(청구항 수를 증가하는 보정서 등)의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지에외적용

공지에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임을 인정받으려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란에는 공지에외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라. 미생물기탁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22. 1. 1.

마.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서열 목록전자파일 1부”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바.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기술이전 희망], [기술이전대가]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 및 대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록됩니다.

[예] [기술이전희망]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예] [기술이전대가] 유상 무상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부처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

을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고유번호]란에 “미부여”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농촌진흥청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농촌진흥청

[연구사업명] 바이오장기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형질전환 복제무균돼지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개발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4. 1. ~ 2019. 3. 3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당단백질과 당지질말단당쇄변화에 기초한 간암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통한 임상적용연구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2. 1. ~ 2019. 1. 31.

아. 국방관련 비밀출원

(1) 국방관련 비밀출원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국방관련 비밀출원]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국방관련 비밀출원]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기타사항]

[국방관련 비밀출원]비밀분류기준에 해당

자. 임시 명세서

임시 명세서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을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시 명세서 제출 시 주의사항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법」 제42조의 2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명세서·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1.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을 적습니다.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합니다)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료]란의 다음 행에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및 [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적고, [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 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를 적으며, [합계]란에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합계]란의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라.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3.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 (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

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을 제출할 시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요약서) 및 별지 제17호서식(도면)을 준용하고, 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4.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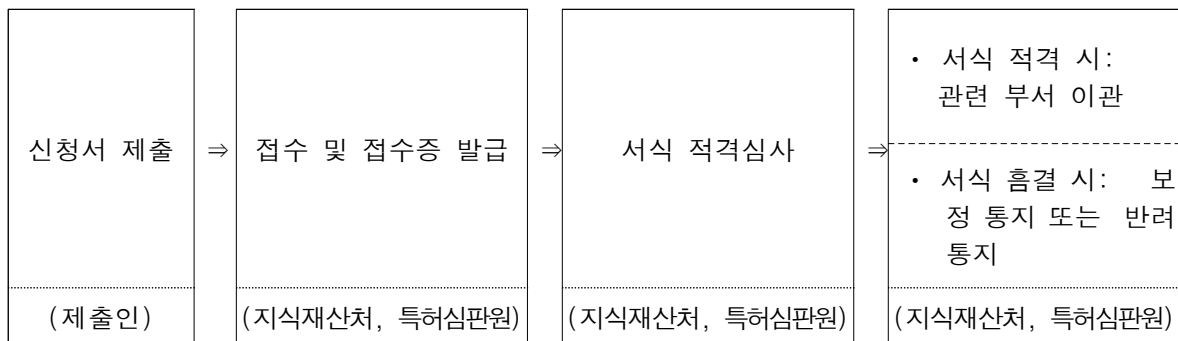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 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 구분	관련 규정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전자문서),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
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자료열람, 자료복사, 서류등본(초본) 발급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및 「상표법」 제215조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또는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 구분]란

신청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특허(등록)권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 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신청대상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료열람 또는 자료복사 신청의 경우에는 [출원번호 등]란을 필요에 따라 [자료제목]란으로 바꾸어 적을 수 있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 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1234567
취소신청에 관한 절차	[취소신청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17-소-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지식재산처참조번호] KR-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234567A KR-2007-1234567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지식재산처참조번호]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KR-2014-3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기재요령 제1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 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등록번호】

(2) 등록원부 발급의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란의 다음 행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란 및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란을 각각 만들고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려는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란의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예 2]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234567-8901234

[예 3]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 주민등록번호 공개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는 “*”로 처리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발급합니다.
- ② 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란의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에 등록권리자(말소된 등록권리자를 포함합니다)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으며,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원부에 적힌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해당 특허(등록)권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나. 【신청대상】란

- (1) 이 난은 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자료열람, 자료복사 또는 서류등본(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등록원부 발급의 경우: “등본” 또는 “사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3)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의 경우: 발급받으려는 서류명을 적습니다.
- (4) 자료열람 또는 자료복사의 경우: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자료를 적습니다.
- (5) 서류등본(초본) 발급의 경우: 출원서류발급 신청 시에는 “출원서류일체(보정서 포함)”, “출원서(출원서, 명세서, 도면)”, “도면 또는 접수(발송)서류”를 반복하여 적습니다. 다만, 심판서류 발급 신청 시에는 발급받으려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신청부수】란

필요한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2건 이상의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별로 각각의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다만, 자료복사 신청의 경우에는 복사 면수 및 부수를 적습니다.

라. 【대표 지정상품(업무)의 명칭】란

상표등록증에 기재되는 대표 지정상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상품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예] 화장품

5. 【신청이유】란

가. 이 난은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및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나. 【신청구분】란 중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명자(고안자,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이유】란에 신청이유를 적고, 【신청이유】란의 다음 행에 【정정(추가)내용】란을 만들어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이 경우 정정(추가)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정정(추가)내용을 표시합니다. 발명자(고안자, 창작자)의 주소가 외국주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 1】란과 【주소 2】란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소 1】란에는 국내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국가명 포함)를 적고, 【주소 2】란에는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주국】란에는 【주소 1】란에 적은 국가명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예] 【신청이유】 발명자(고안자, 창작자)의 정정, 추가

【정정(추가)내용】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플랜트, 제임스

【성명의 영문표기】 PLANT, James

【국적】 US

【우편번호】 8001

【주소 1】 스위스 취리히

【주소 2】 반호프슈트라세 00

【주소의 영문표기】 00 Bahnhofstrasse, Zurich, Switzerland

【거주국】 CH

6. 【수취방법】란

가. 【수취방법】란에는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및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만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및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의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나. 온라인 수취가 가능한 서류 등은 등록원부 사본, 특허(등록)증,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출원서류, 1999년 이후 등록원부기록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취하려는 경우에는 【수취방법】란에 “온라인 수령”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취소신청 관련 서류 또는 심판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7. 【수령인】란

가.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이 난을 적습니다.

나. 수령할 주소를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령인】)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 【우편번호】 , 【주소】란 등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

다. 수령인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증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과 관련된 통지서 등도 그 수령인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라. 특허(등록)증 정정발급(전자문서) 및 재발급(전자문서)의 경우에는 특허로(www.patent.go.kr)

의 「전자등록증 수신함」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8.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9.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의 경우

-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증 1통

(2)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의 경우

- 휴대용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증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

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

- 다. 등록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반드시 등록권리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서류】** 란을 다음 예와 같이 적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라.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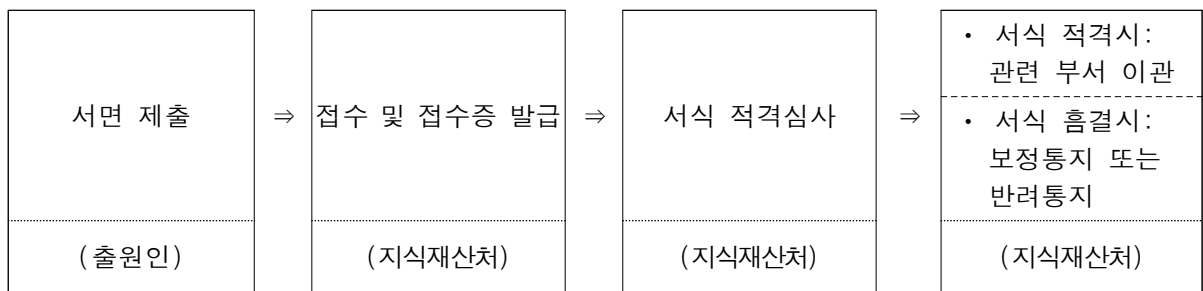
라.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별지 제57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구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 제출기간 이내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01조, 제203조 및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1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대표자 “와 같이 적으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으며,[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 “라고 적어서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3)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기타]란을 만들고 그 취지를 적고,[첨부서류]란에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성명]및[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국제출원번호]및[국제출원일자]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자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국제출원일자]2007. 3. 27.

5.[국제출원언어]란

PCT 국제출원당시 수리관청에 제출한 발명(고안)의 설명 등의 작성언어를 적습니다. 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의 경우에는 발명(고안)의 설명 등의 번역문을 이 서식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6.[발명(고안)의 국문명칭]란

[발명(고안)의 국문명칭]란에는 발명(고안)의 설명의[발명(고안)의 명칭]란에 적힌 국문명칭과 동

일하게 적습니다.

7. [발명자(고안자)]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주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발명자(고안자)의 주소가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 1]란과 [주소 2]란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소 1]란에는 국내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국가명 포함)를 적고, [주소 2]란에는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주국]란에는 [주소 1]란에 적은 국가명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예]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플랜트, 제임스

[성명의 영문표기] PLANTE, James

[국적] US

[우편번호] 8001

[주소 1] 스위스 취리히

[주소 2] 반호프슈트라세 00

[주소의 영문표기] 00 Bahnhofstrasse, Zurich, Switzerland

[거주국] CH

8.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란

국제출원을 국어로 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국내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보정통지를 받고 이

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만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9. [우선권주장]란

가.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선출원에 따라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상기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먼저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란을 기재하지 않고,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출원국명],[출원번호],[출원일자]및[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출원국명]란은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으며,[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 “라고 적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 “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일본국인 경우에는[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 “라고 적습니다.

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출원국명],[출원번호],[출원일자]및[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출원국명]란에는 “KR “이라 적고[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 “라고 적습니다.

10.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구분내용	관련 규정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조기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지예외적용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의 예외적 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미생물기탁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한 미생물을 기탁기 관에 기탁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 2조제5항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	「특허법」 제20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

나.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란에는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다. 미생물기탁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미생물기

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22. 1. 1.

라.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및 [서열개수]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마.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대가]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 및 대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록됩니다.

[예] [기술이전희망]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예] [기술이전대가] 유상 무상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부처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고유번호]란에 “미부여”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농촌진흥청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농촌진흥청

[연구사업명] 바이오장기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형질전환 복제무균돼지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개발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4. 1. ~ 2019. 3. 3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당단백질과 당지질말단당쇄변화에 기초한 간암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통한
임상적용연구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2. 1. ~ 2019. 1. 31.

사.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기타사항]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신청

11.[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을 적습니다.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료]란의 다음 행에[우선권주장료],[심사청구료],[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료] 및[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적고,[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를 적으며,[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료]란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료를 적고,[합계]란에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합계]란의 다음 행에[감면(면제)사유] 및[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0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라.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1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2.[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허법」 제201조(「실용신안법」 제35조)에 따른 발명(고안)의 설명·청구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합니다)의 번역문 각 1통
-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제9호 내지 제11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 (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